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26
----------	-------

발의연월일 : 2026. 7. 29.

발 의 자 : 김남희 · 김기표 · 김한규
김동아 · 서미화 · 홍기원
권칠승 · 전진숙 · 송재봉
임미애 · 고민정 · 남인순
이소영 · 박균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노인학대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

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제15조(미수범)까지의”를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까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및 제15조(미수범)의”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 4. (생 략)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u>제15조(미수범)까지</u> 의 죄 ②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제14조(카메라 등을</u> <u>이용한 촬영)까지, 제14조의2</u> <u>(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u> <u>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u> <u>을 이용한 협박·강요) 및 제</u> <u>15조(미수범)의---</u> ② (현행과 같음) <u>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u> <u>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u> <u>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u> <u>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u>